

영등포구의회
제187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
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』
檢 討 報 告 書



2015. 4. 27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』 檢 討 報 告

1. 경 과

의안 제56호로 2015년 4월 21일 김길자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·지원계획(안 제4조)

나.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서 행위 제한(안 제5조)

다.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과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 마련(안 제6조제1항)

라.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조치 협조 요청(안 제7조)

마. 어린이공원 등의 지킴이 자원봉사활동 참여(안 제8조)

바. 어린이놀이터의 관리비용 중 일부 예산지원(안 제9조)

사. 어린이놀이터 등 관리 실태를 매년 점검하여 표창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,
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없음.

다. 타구개정 : 노원구, 광진구, 서초구, 관악구

라. 입법예고(2015. 4.14 ~ 4.20) : 의견 반영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설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일정한 규정이 없었던 현재 시설 관리체계를 즐겁고 유익한 놀이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.
- 조례 구성은 제1조 목적부터 제11조의 시행규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

○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의 범위는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의 생활권 도시공원 중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 제30조제1항의 자치구 사무관할 구분 및 「주택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」 제55조의2에 따라 현재, 어린이 공원은 18개소,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근린공원 및 녹지 12개소, 공동주택 놀이터 등 주택단지 놀이시설 207개를 포함하여 총 237개소가 본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 조사되었음.

○ 주요 내용을 보면

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관리·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위 제한 규정을 두었으며

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정기점검을 통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점검 결과 기준 미달사항에 대해 관리주체의 지도·감독 규정을 두었으며

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활용하는 자원봉사활동과 실적이 우수한 개인·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는 근거 및 예산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음.

- 관리·지원 부분에서 어린이공원의 예산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에 의해 구청장이 편성·집행하고 있어 시설의 유지 및 보수 등은 행정력을 통해 신속하게 관리되고 있으나,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는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시설에 대해서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리주체가 협력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음.
-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.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 실정에 맞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어린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관 련 법 령

○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
제15조1항(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등)

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. <개정 2012.12.18., 2013.5.22.>

1. 생활권공원: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·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

가. 소공원: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

나. 어린이공원: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

다. 근린공원: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·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

2. 주제공원: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

가. 역사공원: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, 유적·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·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

나. 문화공원: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·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

다. 수변공원: 도시의 하천가·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·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

라. 묘지공원: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

마. 체육공원: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

바. 도시농업공원: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

사. 그 밖에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

○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
제39조(비용부담)

- ① 도시공원,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·관리에 드는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시공원, 공원시설 또는 녹지를 설치·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.
 - ②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시공원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하여는 [제19조제2항](#)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 - ③ [제21조제1항](#)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그 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.
 - ④ [제23조제1항](#)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다른 공작물이 상호 겸용하는 경우 해당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에 드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.
 - ⑤ [제37조](#)에 따라 녹지를 설치·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녹지를 관리하는 행정청과 그 특정 원인 제공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.
 - ⑥ 제5항에 따른 협의를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, 그 밖의 시와 군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.>
 - ⑦ 제6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5항에 따른 협의를 성립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3.3.23.>
- [전문개정 2011.9.16.]

○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55조의2(주민공동시설)

-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역 특성,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.
 1. 100세대 이상 1,000세대 미만: 세대당 2.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
 2. 1,000세대 이상: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
-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. 다만,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,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

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150세대 이상: 경로당, 어린이놀이터

2. 300세대 이상: 경로당, 어린이놀이터, 어린이집

3. 500세대 이상: 경로당, 어린이놀이터, 어린이집, 주민운동시설, 작은도서관

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.

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

1. 경로당

가.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

나. 오락·취미활동·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

다. 급수시설·취사시설·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

2. 어린이놀이터

가.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

나.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, 그 밖의 내장재는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

다.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(도로·광장·시설녹지,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)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

3. 어린이집

가. 「영유아보육법」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

나.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할 것

4. 주민운동시설

가.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

나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

5. 작은도서관은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다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
[본조신설 2013.6.17.]

○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」

제30조(공원·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)

제30조(공원·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) ①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의 사무관할 구분은 **별표 5**와 같다. <개정 2009.1.8.>

② 공원 또는 녹지의 취득·조성 및 기존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의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은 제1항의 사무관할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. 다만, 시장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[별표 5]

공원·녹지의 사무구분(제30조제1항 관련)

| 구분 | 서울특별시 | 자치구 |
|----|---|---|
| 공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면적 10만㎡ 이상의 근린·주제공원 ◦ 시장이 설치·관리하는 공원 ◦ 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공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소공원 ◦ 어린이공원 ◦ 면적 10만㎡ 미만의 근린·주제공원 |
| 녹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국가 및 시 관리시설 주변의 완충녹지 및 연결녹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서울특별시 소관 사무를 제외한 완충녹지 및 연결녹지와 경관녹지 |
| 기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도시자연공원구역 | |